

1. 개정이유

고시에서 규제하고 있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 설치 및 검사수수료 게시 등의 의무사항을 상위법령에 반영하고, 행정처분 가중처분시 회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의무사항 신설(안 제16조제4항, 별표 2의2)

- 1) 고시에서 규정하던 표지판 설치 및 검사수수료 게시 등 의무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나.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시(안 별표 4)

- 1) 행정처분 가중처분시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환경부령 제 호

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장의 주출입구에 별표 2의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표지판을 설치
2.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사 수수료를 게시
3. 사업장의 전산장치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연결
4.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수수료 및 기술인력 현황을 등록

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(제16조제4항제1호 관련)

지정번호 :		↑
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장	↑	600
	150	mm
	↓	
검사업무 범위 :		↓
업 체 명 :		
← 800mm →		

- ※ 비고 1. 표지판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알루미늄으로 한다.
2. 바탕색은 재질 고유의 색상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.
3. 검사업무 범위란에는 모든 자동차의 종합검사 또는 차량총중량 5.5톤 이하 자동차의 종합검사 등 검사시설의 수용능력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의 규모를 표시한다.
4. 업체명란에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명칭을 표기한다.

별표 4 제1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
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(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1. 사업장의 주출입구에 별표 2의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표지판을 설치</u> <u>2.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사수수료를 게시</u> <u>3. 사업장의 전산장치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연결</u> <u>4.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수수료 및 기술인력 현황을 등록</u> <u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u>
<u>④ (생략)</u>	